



---

문서번호 : 18-07-사무-03

수 신 : 제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제 목 :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민변에 대한

사찰 및 의사결정 관여 정황 확인

전송일자 : 2018. 7. 13.(금)

전송매수 : 총 6매

---

## [보도자료]

### 민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민변에 대한 사찰 및 의사결정 관여 정황 확인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모임은 2018. 7. 11.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경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진행된 사법농단 관련 참고인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3. 이 과정에서 우리 모임은, 법원행정처가 우리 모임을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의사결정에 관여하려 한 정황, 그리고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 일부를 “블랙리스트” 로 특정한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4. 우리 모임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2018. 7. 5.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명의로 발표한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모임은 위와 같은 과거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5. 우리 모임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된 경위 및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법농단 관련 문건 중 민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별지]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8년 7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별지]

1. 참고인 조사 경위

-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엄희준 부부장검사는 2018. 7. 4. 민변에 전화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참고인 조사를 요청해 왔음
- 민변은 2018. 7. 6. 검찰에 출석 의사 통보
  - 출석자 : 송상교 사무총장, 최용근 사무차장, 김준우 사무차장
  - 출석시기 : 7. 11. 오후 2시)
- 참고인 조사는 2018. 7. 11.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경까지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총 7개의 문건을 열람하였음

문 건 명	작 성 자	작 성 시 기
①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sup>1)</sup>	김종복 심의원	2017. 1. 7.경
② 통진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 (전주지법 11. 25. 선고) <sup>2)</sup>	사법정책실 심의원 (추정)	2015. 11. 25.경
③ 상고법원 입법추진관련 민변대응전략 <sup>3)</sup>	정다주 (추정)	2014. 12. 2.경 (추정)
④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전략 검토 <sup>4)</sup>	기획조정실 심의원 (추정)	2015. 3. 17.경 (추정)
⑤ 2015년 상고법원 입법추진환경 전망과 대응전략 <sup>5)</sup>	기획조정실 심의원 (추정)	2015. 3. 15.경 (추정)
⑥ 상고법원 관련 법사위 논의 프레임 변경 추진 검토 <sup>6)</sup>	불명	불명
⑦ 문건명 없음 <sup>7)</sup>	불명	2016. 10. 27.경 (추정)

- 송상교 사무총장이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음

1) 2018. 5. 25.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이하 '3차보고서'라 함) 첨부 2. 목록 [74]번 문건

2) 3차보고서 첨부 2. 목록 중 [77]번 문건으로 추정

3) 3차보고서 첨부 2. 목록 중 [84]번 문건, 당해 문건과 3차보고서 첨부 2. 목록 중 [377] 문건은 그 기재가 동일함이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음

4) 3차보고서 첨부 2. 목록 중 [117]번 문건으로 추정

5) 3차보고서 첨부 2. 목록 중 [149]번 문건으로 추정

6) 3차보고서 첨부 2. 목록 중 [383]번 문건으로 추정

7) 파일명 : 000086야당분석.hwp / 3차보고서 첨부 2. 목록 중 [389]번 문건으로 추정

## 2. 문건 내용 중 민변 관련 주요 사항

-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문건 7개 중, 민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건은 ☞ 상고법원 입법추진관련 민변대응전략(위 표 ③), ☞ 2015년 상고법원 입법추진환경 전망과 대응전략(위 표 ⑤), ☞ 파일명 : 000086야당분석.hwp(위 표 ⑦)임

### ○ 상고법원 입법추진관련 민변대응전략

- 2014. 12. 22.경 정다주 심의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
- 검토배경과 관련하여
  - 상고법원 입법 관련 국회의 반대 움직임 극복이 중요한 과제인바, 특히 당시 야당 의원들의 기류에는 민변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민변은 그 자체로서도 일반적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전제
  - “국회와 일반 여론의 상고심 반대<sup>8)</sup>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변에 대한 적극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
- 현황과 관련하여
  - 민변의 회원 수, 주요 임원, 민변의 의사결정 구조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
  - 2014. 12. 5.(금) 당시 민변 임원들이 우윤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방문한 사실 언급
  - 민변의 실질적 의사 결정 방식을 “개별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대외 활동을 하고 이에 대해 여타 이의 제기가 없으면 사실상 민변의 공식 입장으로 굳어지는 방식”으로 규정한 후, 상고법원의 반대 입장에 대하여도 “구성원의 별도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수정·약화 가능성” 있다고 평가
  - 민변의 실질적 목표를 “진보 성향 인사의 대법원 진출”로 규정하고, 신영철 대법관 후임 대법관에 진보 성향 인사를 임명할 경우 상고법원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분석
  - 당 시기 민변의 최대 관심사를 의원 지위 확인사건 등 현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른 후속 대응이라고 규정하고, 향후 당분간 대법원에 의지하고 협조를 구할 사항이 많다고 평가

8) 위 문건에는 “상고심 반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상고법원 반대”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 대응 전략과 관련하여
  - 12. 22. 수립 보고한 ‘대응 전략 기본 방향’<sup>9)</sup>을 원칙적 기조로 유지
  - 강은 양면 전략을 통한 양동 작전 구사 필요성 강조
  - 약한 고리의 대응으로, ① 민변 내 상고법원안 찬성 세력을 확인·모색<sup>10)</sup>하여, ② 적극적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유도·독려한 후, ③ 가까운 시점 또는 1월 대의원회에서 독자적 의견 제출을 목표로 함<sup>11)</sup>
  - 강한 고리의 대응으로, ① 통합진보당 후속 대응 관련 이른바 “빅딜”을 모색<sup>12)</sup><sup>13)</sup>하고, ② “민변 내 상고법원에 대해 주도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 “시변 등 대적할만한 보수적 변호사단체로 하여금 반대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여 대응”하는 방안 검토
  - 범 실·국 차원의 전술 모색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며, 컨트롤 타워를 차장으로 하고, 국회·법무부·BH는 기획조정실이, 민변·경실련·참여연대는 사법정책실이, 언론은 공보관실이 전담하여 상시적 대응체계를 가동

### ○ 2015년 상고법원 입법추진환경 전망과 대응전략

- 2015. 3. 15.경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
- 검토 배경과 관련하여
  -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 필요한 외형적 세력(발의 참여 국회의원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입법 견제·방해 시도에 대한 대응 필요성 역설
- 현황 분석과 관련하여
  - 국회, 특히 야당의 경우, 상고법원 입법을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민변과 연계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대표적으로 전해철 의원을 거시
  - 민변은 상고법원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나, 진보 성향 인사의 대법원 진출이 실질적 목표이므로 신영철 대법관 후임 대법관에 진보 성향 인사가 임명된다면 상고법원안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평가 ; 특히 실제 민변 회원들 사이에서 상고법원안

9) 3차보고서 첨부 2. 목록에 기재된 문건이 아닌 것으로 추정, 민변에 대한 일반적 대응 전략 기조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됨

10) 접촉 채널로 문병호 의원을 거시

11) 이와 함께 조국 교수 등 진보 성향 교수를 접촉하고, 최원식 의원 토론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소개되어 있음

12) 다만 이는 극히 민감한 사안이므로 지양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음

13) 이와 관련하여 이재화 당시 사법위원장에 대한 세평 기재

- 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갈릴 것으로 분석
- 대응 전략과 관련하여
    - 강은 양면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민변의 경우 약한 고리/강한 고리에 대한 대응<sup>14)</sup>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이러한 의도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힘

○ 000086야당분석.hwp

- 2016. 10. 27.경 작성한 것으로 추정, 작성자는 불명
- 당해 파일은 정리된 문건이 아니며, 아래한글 워드프로세서 창에 간단한 메모들이 단문으로 기재된 형태
- 상단에는 [개헌특위]라 기재되어 있고, 이후 특위 구성 등에 대한 작성자의 의견으로 추정되는 내용들이 연이어 기재
- 하단부 전문위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 연이어 “블랙리스트 작성 ⇒ 안 되는 이유를 펴뜨려야 함”이라는 중간 제목 아래 당시 민변 전·현직 집행부 중심 7명 변호사의 성명과 사법연수원 기수가 기재되어 있고, 일부 변호사의 경우 소속 사무실 명칭도 부기되어 있음
- 위 변호사 이름 기재 하단에 “[더불어민주당]” 표제가 있고, 약 40명 가량의 국회의원 성명이 선수(選數)별로 기재되어 있음

---

14) 이는 앞서 살펴본 “상고법원 입법추진관련 민변대응전략” 문건 기재와 같음